

인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3118 판결 [압류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변론 종결 2016. 3. 23.

판결 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88. 7. 9. 접수 제72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등기소 1988. 7. 9. 접수 제725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B은 2010. 6. 28.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은 그 법정상속인이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F, G, H, I: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재판장판사권희

판사김용민

판사선민정

별지